

대한민국

인신매매퇴치 및 감시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2016 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대한민국: 1 등급

대한민국(한국 혹은 남한)은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송출국·경유국·기착국이다. 한국 여성들은 국내외에서 강제로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보통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기착국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매춘업체를 통해 강제로 매춘에 종사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성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은 매춘을 강요받는다.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언어적·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생활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아동들은 온라인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하다. 일부 가출 소녀들은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북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남아메리카 출신의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지역 출신 여성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상당수의 근로자를 포함한 약 50만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E6-2 호텔·유학 비자로 입국한—대부분이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출신인—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항구와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강제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처가는 경유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을 비준했다. 당국은 421건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그 중 146건에 연루된 피의자 214명을 기소했으며 64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수사 절차,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게끔 국내

법률을 조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인신매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에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법률을 적용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형법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충분히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법의 정의에 따라—약취, 매매, 강제력 혹은 감금 여부와 상관없이—‘인신매매’를 해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표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용하여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개인, 장애인, 모든 비자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사전 식별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염전 등 착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발급한 호텔·유흥 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법 처리 노력을 지속했다. 형법 제31장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의 형량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보다 형량이 낮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근로기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421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214명을 기소하고 그 중 64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 피의자 대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출입국관리규정의 일관성 없는 적용과 유죄가 확정된 사범의 실제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백 명의 내국인 장애인 남성들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2014년 3월 사건을 계기로 전국 800개 이상의 염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으며 염전 업주와 브로커 40명에 대해 다양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업주들은 염전을 작은 구획으로 분할하여 인부들을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검사, 판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련의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연중 실시했다. 검찰은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으며 범인 도피를 도운 경찰관 1명을 함께 기소했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15년에 경찰청은 전담 법집행 담당자의 임명에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외국인 피해자 58명(2014년의 경우 58명)을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2013년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상당수 법집행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식별 지침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였다. 여성가족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91개 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8,410명이 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용노동부는 39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부 포함된 수백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상담, 교육, 직업훈련, 숙소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조사할 때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를 동석시켰다.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는 인신매매 식별 지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수강명령, 송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점이나 업소에서 사건을 재연할 것을 강요했으며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들이 구금 상태의 피해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해자에 위협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두 계층인 외국인 배우자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과 기소에 협조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G-1 비자를 발급하고 최장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 수단을 활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2015년 11월에 정부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조약의 정서를 비준했다.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 지자체 및 20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제1회 ‘성매매 추방 주간’을 시행하여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 홍보, 온라인 캠페인, 대국민 홍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행사 등을 주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추방 주간의 출범을 기념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어업 부문에서의 성적 착취 및 강제 노역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그리고 관광객과 투어 그룹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성매매와 모집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 8,000곳, 취약 여성 고용 사업장 506곳,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13개국어로 핫라인을 운영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핫라인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4,552명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방지 법률과 정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증진행동계획에 인신매매 방지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2014년 염전에 만연한 강제 노역 실태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강제 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전 업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기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상업적 성매매 수요를 근절할 목적으로 공항, 기차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 남성들은 주로 여행사 단위 골프 그룹 투어나 사업 출장의 형태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를 여행하면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수요자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 참가한 내국인 15명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했으나 내국인 성매매 관광 사범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출국 전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외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